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람	기관의장

제935호 2012.12.28.(금)

차 례

규 칙

-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03호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
규칙 ----- 1

고 시

-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2 - 94호 국가기초구역 고시 ----- 8

회
람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기획홍보실 [032-560-4140]

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전 년 성

2012년 12월 28일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803호

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) 「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)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 방법은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한다.

1. 금연(흡연)구역 및 범위
2. 도면
3.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

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(제2조 관련)

1. 공원

가. 규격 및 재질

1) 구조 : 지주에 표지판 전후 양면(또는 단면) 부착구조(세로형)

1) 규격 : 60×180×15cm(W×H×D)

2) 재질 : 자연속성목

나. 도안요령

1) 내용구성

가) 타이틀(금연공원) 표시

나) 금연픽토그램 표시

다) 금연구역 조성목적,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: “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”

라) 금연구역 경계(도면 및 금연구역 범위) 표시

마) 인천광역시 서구 **심볼마크** 표시

2) 글씨체 : 국문-HY울릉도B, 윤고딕350

3) 색상

가) 바탕색 : 공원색(DIC 644)

나) 타이틀/문구 : 백색, 노랑색(Pantone 109)

다) 금연 픽토그램 : 적색(DIC 199), 백색, 검정색



2. 기타구역

가. 어린이놀이터

- 1) 규격 : Ø45cm
- 2) 재질 : PVC 5mm, 실사출력, UV코팅
- 3) 도안예시



나. 학교절대정화구역

- 1) 규격 : Ø45cm
- 2) 재질 : PVC 5mm, 실사출력, UV코팅
- 3) 도안예시



다. 버스정류소

- 1) 규격 : Ø45cm
- 2) 재질 : PVC재질, 실사출력, UV코팅
- 3) 도안예시



라.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

- 1) 규격 : Ø45cm
- 2) 재질 : PVC 5mm, 실사출력, UV코팅
- 3) 도안예시



마. 공동주택

- 1) 규격 : Ø45cm
- 2) 재질 : PVC 5mm, 실사출력, UV코팅
- 3) 도안예시



바. 흡연구역

- 1) 규격 : 24cm×15cm(W×H)
- 2) 재질 : UV코팅 유포지 실사출력
- 3) 도안 예시



3. 공통사항

가. 표시방법

- 1)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,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- 2)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, 한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나. 설치방법

- 1)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.
 - 가)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구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
 - 나) 구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
 - 다)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
- 2) 표지판,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.
- 3) 눈·비·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.

다. 관리기준

- 1) 「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.
- 2)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.
- 3)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2 - 94호

국가기초구역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, 지번 현황 조서는 서구 토지정보과 (☎032-560-4830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2년 12월 21일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

구역번호			
시·군·구 국가기초구역 전체 도면	국가기초구역 확대 도면		
면적	km ²	주민 수	명

2.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현황

구역번호	도로명주소	비고

3. 국가기초구역 내 소재한 지번 현황

구역번호	법정동과 지번	다른 기초구역과 겹쳐 있는지 여부(○)	비고

4. 국가기초구역 고시일 : 2012. 12. 21.

5. 문의

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(☎032-560-4830)

※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, 지번 현황 조서는 서구보 게재를 생략하며 시·군·구 홈페이지에 파일 게시합니다.